

[X]. 제7장(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7-바장**  
**디지털 무역**

**제7바.1조**  
**목적**

1. 양 당사국은 개방된 디지털 시장의 경제적 유익함과 그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가. 디지털 무역 시스템의 이용 및 개발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회피하는 것
  - 나.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는 것
  - 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디지털 무역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국제 협력
  - 라. 다음의 국제 및 국내 체계를 채택하는 것
    - 1) 신생 기술을 고려하는 체계, 그리고
    - 2) 디지털 무역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증진하면서, 이에 참여하는 소비자 및 기업의 이익을 제고하는 체계

**제7바.2조**  
**적용 범위 및 일반 규정**

1. 이 장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정부조달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장은 제7바.16조를 제외하고, 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당사국을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수집에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에 관련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제7-가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7-나장(투자) 및 제7-라장(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그러한 의무에 적용 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포함)의 대상이다.

### 제7바.3조

####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중앙정부**란 제7가.2조(정의)에 정의된 중앙정부를 말한다.

**컴퓨터 설비**란 상업적 용도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컴퓨터 서버 또는 저장 장치를 말한다.

**적용대상인**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제7나.2조(정의)에 정의된 적용대상투자

나. 제7나.2조(정의)에 정의된 당사국의 투자자. 다만, 금융기관<sup>1</sup>에 대한 투자

---

<sup>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그 밖의 투자와 관련하여 여전히 “적용대상인” 일 수 있다.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다. 제7가.1조(정의)에 정의된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다만, 제7라.2조(정의)에 정의된 금융서비스 공급자, 금융기관, 또는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 서비스 공급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검증하거나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송장** 또는 **e-송장**이란 구조화된 디지털 형식을 사용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 송장을 자동으로 생성, 처리 및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전자 데이터 메시지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그 데이터 메시지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그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자적 전송**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송을 말하며, 그 전송의 콘텐츠를 포함한다.

**최종이용자**란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인터넷 접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구독하는 인을 말한다.

**기업**이란 제7가.2조(정의)에 정의된 기업을 말한다.

**조치**란 제7가.2조(정의)에 정의된 조치를 말한다.

**당사국의 조치**란 제7가.2조(정의)에 정의된 대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인**이란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제7가.2조(정의)에 정의된 대로,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공중 통신 서비스란 제7마.2조(정의)에 정의된 공중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 또는 문서를 말한다.  
그리고

요청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란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공중 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상업적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에게 직접 발송되는 전자 메시지<sup>2</sup>를 말한다.

#### 제7바.4조 관세

1.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 간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내국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경우라면, 당사국이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그러한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 제7바.5조 국내 전자거래 체계

---

<sup>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자 메시지는 전자우편 및 문자(단문 메시지 서비스)와 멀티미디어(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메시지를 포함한다.

1. 각 당사국은 1996년 6월 12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1996) 또는 2005년 11월 23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원칙과 합치되게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전자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적 부담을 피한다. 그리고

나. 전자거래를 위한 자국의 법 체계의 개발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한다.

3. 양 당사국은 전자양도성 기록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2017년 7월 13일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양도성 기록에 관한 모델법」(2017)의 일반 원칙과 합치되게 전자양도성 기록을 규율하는 법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제7바.6조

### 전자적 수단에 의한 계약의 체결

1. 자국의 법에 달리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국은 전자계약<sup>3</sup>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근거만으로 그 계약의 법적 효력, 법적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며 계약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근거만으로 자국의 법 체계가 전자계약의 이용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에서 전자계약의 이용에 대한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더 나아가 제1항에 언급된 상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의 유익함을 인정하며,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sup>3</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자계약은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포함한다.

**제7바.7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sup>4</sup>**

1. 양 당사국은 보다 높은 확실성, 무결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공하는 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이 가지는 이점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이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달리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국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근거만으로 그 서명의 법적 효력, 법적 유효성 또는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서의 허용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3.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전자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전자인증 방법 또는 전자서명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또는

나.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자신의 거래가 전자인증 또는 전자서명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방해하는 조치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전자인증 또는 전자서명의 방법이 자국의 법에 따라 공인된 당국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규정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전자인장, 전자 시점확인(time stamp) 및 전자등기배달 서비스에 적용한다.

6. 양 당사국은

---

<sup>4</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전자 데이터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표시하거나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에 대하여 더 큰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인증의 이용을 장려한다.
- 나. 전자서명의 상호 인정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 그리고
- 다.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과 관련된 규제 협력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 제7바.8조 디지털 신원

1. 당사국이 디지털 신원에 대하여 상이한 법적·기술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디지털 신원에 관한 협력이 지역 및 세계의 연결을 확대할 것임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각국의 디지털 신원 체제 간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추구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각 당사국의 디지털 신원 구현 간 기술적 상호운용성의 강화
- 나. 각 당사국의 법에 따른 디지털 신원에 대한 유사한 보호의 개발
- 다. 디지털 신원 체제에 대한 국제 체계의 개발 지원, 그리고
- 라. 디지털 신원 정책 및 규제, 기술적 구현 및 보안 표준, 그리고 디지털 신원 사용의 증진과 관련된 우수 관행에 대한 지식 및 전문 지식의 교환

### 제7바.9조 중이 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영어로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식의 그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그 당사국이 반대되는 국내 또는 국제 법적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또는
  - 나.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역행정의 효과성을 감소시키게 될 경우
4.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의 수용을 증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종이 없는 무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자적으로 그리고 국제 포럼에서 협력한다.
5. 종이 없는 무역의 이용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때,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 제7바.10조

### 전자송장

1. 양 당사국은 상업적 거래의 효율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송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에 관련된 조치의 이행이 양 당사국의 전자송장 체계 간의 국경 간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전자송장과 관련된 조치를 개발하는 경우 국제 체계를 고려한다.

3. 양 당사국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송장 시스템의 전 세계적인 채택을 증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우수 관행을 공유하고, 적절한 경우 전자송장을 위한 상호운용이 가능한 시스템의 채택을 증진하는 데 협력한다.

### 제7바.11조 개방형 인터넷 접근

자국의 적용 가능한 정책, 법 및 규정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 최종이용자가 다음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가. 합리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조건으로, 최종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접근하고 이용하는 것<sup>5</sup>
- 나. 최종이용자가 선택한 장치가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그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 다. 최종이용자의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의 네트워크 관리 관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

### 제7바.12조 개인정보 보호

1. 양 당사국은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디지털 무역에서의 소비자 확신과 신뢰를 강화하는 경제적·사회적 유익함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

<sup>5</sup> 양 당사국은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가입자에게 관련된 데이터를 가입자의 데이터 허용량에 포함시키지 않고 특정한 콘텐츠를 제공하더라도 이러한 의무에 위배되지 않음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법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국의 법 체계를 개발할 때,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한다. 각 당사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기초가 되는 원칙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수집 및 사용 제한

나. 데이터의 질

다. 목적 명기

라. 보안 장치

마. 투명성

바. 개인의 참여, 그리고

사. 책임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때 비차별적 관행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개인에게 자국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

가. 개인이 구제 또는 청구수단을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 기업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6. 양 당사국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상이한 법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국의 법 체계 간의 호환성을 증진하고 이러한 체계

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을 추구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자율적으로 또는 상호 약정으로 부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규제 결과에 대한 인정 또는 광범위한 국제 체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메커니즘 간의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을 증진하기 위한 이러한 메커니즘 또는 다른 적절한 약정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 제7바.13조

#### 컴퓨터 설비의 위치

1.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영역에 있는 컴퓨터 설비를 사용할 것 또는 그 영역에 컴퓨터 설비를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제7바.14조

####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

1. 양 당사국은 당사국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이전에 관하여 자국의 규제 요건을 갖출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그 활동이 적용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개인 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의 이전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제7바.15조

#### 데이터 혁신

1. 양 당사국은 데이터 혁신이 향상된 데이터 주도의 서비스 및 기술을 통하여 경제적 · 사회적 유익함을 증진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험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하며 이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연구자, 학계 또는 산업계가 관여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나. 데이터 이동성을 위한 정책 및 표준 개발에 대한 협력, 그리고

다. 데이터 혁신과 관련된 연구 관행 및 산업계 관행 공유

#### 제7바.16조

#### 정부 정보 공개

1. 이 조의 목적상, 정부 정보란 중앙정부가 보유하는 정보를 말하며, 국내법<sup>6</sup>에 따라 그 정보의 공개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정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의 촉진이 경제적·사회적 발전, 경쟁력 및 혁신을 강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이해관계자와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을 위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이용 가능한 정부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장려된다.

3.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이해관계인에게 특정 정부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4. 당사국이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을 위하여 정부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선택하는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정보가 다음과 같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기계 판독이 가능하고 공개된 형식이며, 검색, 불러오기, 사용, 재사용 및 재배포가 가능할 것

나.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자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에 기반한 메타데이터를 수반할 것, 그리고

다.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신뢰할 수 있고 사용이 용이하며 무료로 이용 가능한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공간적으로 구현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갱신될 것

5. 당사국이 정부 정보를 대중에게 디지털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선택하는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정보의 이용자가 다음을 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sup>7</sup>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한다.

---

<sup>6</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지식재산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당사국의 법을 저해하지 않는다.

<sup>7</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그 정보의 이용자에게 원 출처로의 링크 연결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가. 그 정보를 재생산, 재분배 또는 재공표하는 것

나. 그 정보를 재구성하는 것, 또는

다.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서의 사용을 포함하여, 그 정보를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6. 양 당사국은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 및 사업 기회를 증진하고 창출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공개한 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7바.17조

####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에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온라인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피해 또는 잠재적 피해를 불러오는 오도하거나 기만적이거나 사기적인 상업 활동을 금지하는 법과 규정을 포함하여, 온라인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온라인과 그 밖의 형태의 상거래 간 보호 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온라인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자국의 법에 따라 그 밖의 형태의 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수준보다 사실상 낮지 않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sup>8</sup>

4. 양 당사국은 온라인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경우, 온라인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각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구 간 협력을 증진한다.

---

<sup>8</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온라인 상업 활동이 온라인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와 거래하는 한쪽 당사국의 소비자를 위한 경우를 포함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메커니즘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인식 및 접근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6. 양 당사국은 온라인 상업 활동과 관련된 청구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안적 분쟁 해결을 포함한 메커니즘의 유익함을 탐색하도록 노력한다.

### 제7바.18조

####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1. 각 당사국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게 그러한 메시지의 지속적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신자<sup>9</sup>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또는

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명시된 대로,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

2. 각 당사국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가 그 자체로 명확히 식별 가능하며, 그 메시지가 누구를 대신하여 작성되었는지 명확히 밝히고, 수신자가 언제든지 무료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각 당사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 대하여 피해구제 또는 청구수단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

<sup>9</sup> 이 조의 목적상, 영국이 수신자와 관련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는 개인에게 적용되며, 영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한도에서 기업에도 적용된다. 한국이 수신자와 관련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는 개인 및 기업에 적용된다.

4. 양 당사국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규제에 관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적절한 경우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7바.19조

##### 소스코드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이나 그에 대한 접근을 자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소프트웨어 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2.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한쪽 당사국의 규제 당국, 법 집행 기관 또는 사법 기관,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이나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적합성 평가기관이 무단 공개에 대한 보호장치를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조사, 수사, 검사, 집행 조치 또는 행정 절차나 사법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보존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 또는

나. 조사, 수사, 검사, 집행 조치 또는 행정 절차나 사법 절차 후, 당사국의 경쟁법에 따라 당사국의 규제 기관 또는 사법 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집행되거나 채택되는 시정조치에 적용하는 것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자유롭게 협상된 계약의 맥락에서와 같은 상업적 기반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자발적인 이전 또는 그에 대한 접근의 허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7바.20조

##### 사이버보안

1. 양 당사국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이 디지털 무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또한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가. 연수 및 육성, 그리고 상호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가능한 이니셔티브를 통한 것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인력 개발, 그리고

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내의 더 높은 사이버보안 복원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하도록 노력한다.

가. 사이버보안 위협의 진화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각국의 국가 기관의 역량을 구축한다.

나. 양 당사국 각자의 영역에서 전자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침입 또는 악성코드 유포를 예측, 적발 및 경감하고, 사이버보안 사고를 신속하게 다루기 위한 협력을 유지한다. 그리고

다.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정보 및 우수 관행을 공유함으로써 협력한다.

3. 사이버보안 위협의 진화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그러한 위협을 다루는 데 위협기반 접근방식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협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보호하며, 사이버보안 사건을 적발하고,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응하고 그로부터 회복하며, 자국의 사이버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위험 관리 우수 관행과 합의 기반의 투명하고 개방된 방식으로 개발된 표준에 의존하는 위협기반 접근방식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자국의 관할권 내 기업이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 제7바.21조

### 인공지능

1. 양 당사국은 인공지능(이하 “AI” 라 한다)이 특히 국제 무역 및 투자 흐름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AI 기술의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용을 위한 거버넌스 및 정책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중요함을 인정한다. 디지털 경제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양 당사국 각자의 관할권을 넘어서 AI 기술의 채택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이해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체계가 적절한 범위에서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의 유익함을 인정한다.

3.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AI 기술의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용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및 정책 체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체계를 증진할 때, 양 당사국은 기술 표준 및 우수 관행에 기반한 규제와 기술적 상호운용성 원칙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4. AI 거버넌스 및 정책 체계를 채택할 때, 양 당사국은 설명가능성, 투명성, 안전성, 보안, 책임성, 공정성 및 인간 중심적 가치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5. 디지털 경제의 초국경적 특성과 상호 이해를 발전시키고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거버넌스 및 정책 체계가 적절한 범위에서 양립 가능하고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의 유익함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그러한 양립가능성 및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는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

6.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에 대하여 AI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정보를 교환하고 법, 규정, 정책, 집행 및 준수에 대한 경험 및 우수 관행을 공유하는 것

나. 의도하지 않은 편향 및 기술 표준과 관련된 문제 또는 진전사항에 대하여 협력하는 것

다. AI 연구개발 및 투자 기회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의 정부 및 비정부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라. 다음에 대하여 국제 포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1) AI의 성장을 지원하는 국제 기술 표준, 규제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지원, 그리고

2) 무역과 AI 간 상호작용과 관련된 사안

7. 디지털 경제의 초국경적 특성과 양 당사국 각자의 관할권을 넘어 AI 기술의 채택 및 이용을 촉진하는 것의 유익함을 고려하여, 무역위원회는 제15.1조제4항다호 및 제15.1조제4항마호에 따라,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양 당사국 각자의 AI 거버넌스 체계의 양립가능성 및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조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제7바.22조

### 디지털 포용

1. 양 당사국은 모든 사람과 기업이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 참여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여 디지털 무역 기회를 확장하고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장벽에 불균형적으로 직면하는 여성 및 그 밖의 집단과 개인의 참여를 포함하여,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연결과 관련된 도전과제를 포함하여 디지털 무역 기회에 대한 접근 장벽을 확인하고 다루는 것

- 나. 디지털 무역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점검하기 위한 방법의 개발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디지털 무역 정책과 관련하여 데이터 세트를 개발하고 성별 중심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공유하는 것
  - 다.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 비즈니스 도구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활동
3. 양 당사국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서 여성 주도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러한 기관을 위하여 디지털 무역 참여에 대한 장벽을 다룰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중소기업의 자본 및 신용에 대한 접근 및 역량과 시장 범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활용하는 데에 정보를 교환하고 우수 관행을 공유하는 것
  - 나. 중소기업이 국제 공급자, 구매자 및 그 밖의 잠재적 사업 파트너와 연결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및 그 밖의 메커니즘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 그리고
  - 다.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간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는 것
4.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에서 디지털 포용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증진하기 위하여 WTO 및 그 밖의 국제 포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 제7바.23조

#### 환경의 지속가능성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간 기존의 그리고 잠재적인 미래의 연계, 그리고 디지털 무역의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면서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의 환경적 측면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협력은 디지털 무역과 환경 간 상호 영향을 평가하는 것과 그러한 영향을 강화, 방지 또는 완화시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은 또한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무역 간의 연계를 다루는 것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제7바.24조

### 협력

1. 양 당사국은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무역의 특성과 기업, 소비자 및 사회를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증진하는 데 양 당사국 간 협력의 역할을 인정한다.

2. 이 장의 다른 부분에서 확인된 양 당사국 간의 협력 분야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 규정, 정책, 집행 및 준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 및 우수 관행을 공유한다.

3.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디지털 무역을 위한 국제 체계의 개발 및 채택을 증진하기 위하여 WTO를 포함한 국제 포럼에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양 당사국은 행동규범, 표준계약, 지침 및 준수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디지털 무역을 강화하는 민간 부문별 자율규제 방법의 개발을 장려한다.”